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어머니의 수술을 거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8
 청구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 정○○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07. 7. 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병원서 임의 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1일자 10면)

내용 : (전략) 정 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나간 채 병원으로 실려 온 정 씨의 어머니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중략)

이에 정 씨는 입원한 지 10개월만인 3월 13일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호하다 14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후 정 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A병원에 “입관할 때 함께 넣으려고하니 보관 중인 어머니 신체의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했다는 것. 정 씨는 “장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대형병원밖에 없어 이곳에 맡겨둔 것인데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변론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수술비용문제로 가족측이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합의사항 (1)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A병원이 접합수술을 위해 보관했던 환자의 신체일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처분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따라서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수술비용문제로 가족측이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2)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0면 『접합수술

위해 보관했던 환자 신체 일부 병원서 임의폐기처분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수술이 가능해졌을 때 가족 측이 수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병원 측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고인이 된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으므로 가족측이 수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문제로 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16포인트 고딕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12포인트 명조활자로 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2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부정입찰로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뒤 하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경북문화신문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07. 7. 3

처리결과 : 취하 (정정)

합의 (반론)

보도내용

경북문화신문 :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6월 28일자 15면)

내용 :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 S토건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발주와 관련, 금품수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D건설사에 회장으로 있는 정모씨가 S토건의 회장 아들 J모씨와의 친분을 이용, 입찰에 부정을 저질러 140억 원 짜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미끼로 역대 돈을 받아 챙기는 등 S토건 본사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S토건은 공개 입찰에서 총사업비 435억6천900만 원에 일월~문덕 7km구간의 국도 대체 우회 도로를 낙찰 받아 지난 2004년 11월께 착공한 문제의 D건설사 정모 회장에게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에 대한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D건설사 정모 회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모씨는 D건설사의 정모 회장의 지시로 명절 때마다 송이버섯, 소갈비 등 값 비싼 선물을 S토건 서울 본사 간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D건설사 회장 정모씨는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최모씨 등으

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실제 하청 계약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에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공사 원청 업체 S토건이 당초에 입찰로 하도급에 낙찰된 J모 건설회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시키고 정모 회장이 있는 D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것은 거액의 로비 자금이 전달 됐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이씨가 주장했다.

피해자 이씨는 정 회장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D건설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고 하도급 업체를 전격 교체해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 포항 일월~문덕 도로공사시공, S토건 하청, D건설 “하도급 미끼 역대금품수수”
- 내용 : 본지는 지난 6월 28일자 15면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D건설사의 정모 회장이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S토건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하여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고, 본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역대 돈을 받아챙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D건설사는 당초 하도급에 낙찰된 J모 건설회사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추후 정상적인 경쟁 입찰 참여로 도로건설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정모회장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6월 28일자 15면 『“하도급 미끼 역대 금품수수”』 제하의 기사에서 D건설사 회장 정모씨가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월~문덕 간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S토건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여 이미 입찰경쟁에서 하도급 공사 낙찰을 받았던 J건설을 따돌리고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하도급을 따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건설 정모 회장은 당초 J건설이 약 140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계약을 S토건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J건설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포기해 D건설이 이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따라서 마치 D건설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여 S토건으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게 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D건설이 S토건으로부터 따낸 하도급 부분은 총 140억 원의 공사 중 약 17%에 해당하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24억 원에 그치므로 S토건이 정 회장에게 140억 원짜리 토목공사 전부를 하도급 준 것처럼 보도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토목공사 하청계약을 미끼로 공사업자 몇몇으로부터 1억5천여 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니다. 덧붙여, 정 회장은 자신의 지시로 ‘S토건 서울본사 간부들에게 비싼 선물들을 전달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문화신보 15면 우측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2007년 7월 13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일월~문덕 도로공사 하도급 부정 관련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재목(피해 주장 **李모씨** ‘140억 공사 입찰비리’ 폭로)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문화신보 : 『반론보도문 포항 일월~문덕도로공사 시공, S토건하청, D건설 “하도급미끼 역대금품수수”』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3일자 2면)

내 용 : 경북문화신보는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주장 **李모씨** 140억 공사입찰비리 폭로』 제목의 기사에서 D건설 정모 회장은 입찰은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하였고 다른 어떠한 입찰부정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북문화신보는 정모 회장이 공사를 미끼로 공사업체 관계자 최모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의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또한 당초 하도급 낙찰된 J건설은 공사수행중 문화재 및 보상지연으로 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어 원청사인 S토건과 협의하여 공사를 자진 포기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